

1. 출제 범위별 배점 분포 현황

구분		36회차	37회차	38회차	39회차	40회차	41회차	42회차	43회차	총합	
		19	20	21	22	23	24	25	26	부별	섹션별
통칙										-	-
1~4부	1부		10				6		13	29	133
	2부		10				14			24	
	3부									-	
	4부	50					30			80	
6, 7부	6부		10		30	30		15	14	99	119
	7부				20					20	
5, 8, 9, 10, 13부	5부	10						10	16	36	66
	8부									-	
	9부									-	
	10부			10						10	
11, 12부	13부							20		20	90
	11부		50				30	10		90	
14, 15부	12부									-	45
	14부									-	
16부	15부		10			30		5		45	156
	16부	10	10	60	30	20	20		6	156	
17 ~ 21부	17부					20				20	111
	18부								34	34	
	19부			10				20		30	
	20부	10							17	27	
	21부									-	
단순종합		20		20	20			5		65	65
기 타								15		15	15

2. 근거별 배점 분포 현황

2026년 제43회		배점	통칙	주	호	소호 이하	해설서 총설	호해설서
문제 1	물음 1	10		10				
	물음 2	12		12				
	물음 3	8			7	1		
문제 2	물음 1	17		17				
	물음 2	3			2	1		
문제 3	물음 1	13						13
	물음 2	11					8	3
	물음 3	6		4				2
문제 4	물음 1	11		11				9
	물음 2	9						
총합		100	0	54	9	2	8	27

통칙, 주, 호	63
해설서 총설	8
불의타	29

3. 총평

이번 제43회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은 호해설서 출제 부분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출제된 규정들은 학습은 물론 학원 모의고사에서도 다 다루었던 규정입니다.

또한, 관세율표 시험은 동일 규정을 다른 형태로 반복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2]의 물음 1)에서 출제된 제91류, 제92류의 제외 규정은 2017년 제34회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만큼, 수험생들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기출에서 다루어진 영역은 다음 시험에서 이처럼 다른 형태로 언제든지 재출제될 수 있습니다.

1) 비기출 영역과 연계형 문제의 반복되는 출제

2026년 제43회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시험은 강의에서나 마무리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관세율표 출제 경향이 연속되었습니다.

비기출 또는 기출 비중이 감소한 영역에 대하여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단순히 한 부 또는 한 류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에서 연계되는 부나 류의 문제의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① 문제 1의 경우 부와 부를 연계하여 배치한 형식은 취하였으나, 실제 문항은 각 파트의 규정을 독립적으로 서술하는 수준에 그쳐 연계형 문제로서의 완성도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 ② 문제 3번과 문제 4번도 연계형 문제이지만, 법적 주 규정을 넘어 호해설서를 근거로 문제를 구성했기에 이는 관세사 자격시험의 평가 대상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 3번의 순도 관련 규정은 강의에서도 다루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호해설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수험 목적상 다소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2) 사례형 문제의 부재

최근 경향 중 사례형 문제가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제대로 학습한 학생의 변별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이며, 다른 자격사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는 단순 암기력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체계에 대한 이해와 법적 사고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는 정교한 사례형 문제를 개발하는 대신, 지엽적인 호 해설서 출제를 통하여 변별력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관세사 자격시험의 평가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지엽적인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호 해설서 문제 이외에는 여전히 단순히 암기력만을 평가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호해설서의 출제

이번 시험에서 호해설서에 대한 출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호해설서는 품목분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고자료와 관세사 자격시험에서의 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해설서가 법적 효력은 있지만 실무에서조차 필요에 따라 찾아보며 활용하는 방대한 분량의 호해설서를 수험생에게 암기하여 재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관세사 자격시험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작년 42회차 시험은 개인적으로 출제위원께서 출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좋은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호해설서를 일부 활용한 것과 불필요한 협약이 고배점으로 나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이번 출제위원께서 작년 문제를 참고하시고 출제를 하신 것이라 생각되긴 하지만, 실제 수험생들이 학습하는 범위와 관세사 시험이 평가해야 할 역량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 출제였습니다.

불문물 규정은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해설서 총설 규정이며, 해당 부분의 출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해설서 중 총설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봐야합니다. 통칙과 제16부의 일부규정, 그리고 암기하여야 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학습은 하되, 어떠한 주제와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설서 총설은 제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해설서는 실무에서 필요할 때 찾아보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험생에게 암기하여 재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세사 시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호해설서의 출제가 간혹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업에서 기출된 것에 대한 일부 내용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호해설서는 학습하여야 할 범위로 설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며, 관세율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제의 일시적인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제기관에서는 자격사 시험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출제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이번 시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출제의 중심축은 여전히 “주”와 “호”, 그리고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통칙”입니다. 설령 호해설서 기반 문항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의 기본 법령인 통칙, 주, 호를 충실하게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합격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배점 구조입니다.

시험 자체는 새로운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을 결정하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례형이 변별력으로 어렵게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율표의 기본 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진 수험생이라면 어떠한 형태로 시험이 나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과락을 넘어 합격권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세율표 시험의 본질은 통칙·주·호입니다.

이번 시험 역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장에서 느꼈던 불안함과 아쉬움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합격은 시험 당일 몇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험기간 동안 여러분이 쌓아 온 실력과 노력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과정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걸어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출제 경향을 분석하시되, 출제 범위의 확장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관세율표 시험의 본질은 통칙·주·호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확실한 합격 전략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6월 13일

FTA관세무역연구원

관세율표 강사 김기철 관세사 드림

[문제 1] 관세율표 제1부와 제20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물음 1) 관세율표 제4류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서술하십시오. (10점)

- (1) 제4류 주(Notes) 제1호
- (2) 제4류 주(Notes) 제3호 나목
- (3) 제4류 주(Notes) 제4호

물음 2) 관세율표 제95류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서술하십시오. (12점)

- (1) 제95류 주(Notes) 제6호 가목 “놀이공원 탈것”의 정의
- (2) 제95류 주(Notes) 제6호 나목 “워터파크 놀이기구”의 정의
- (3) 제95류 주(Notes) 제6호 다목 “유원지용 오락물”의 정의

물음 3) 다음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를 각각 쓰시오. (8점)

- (1) 치즈와 커드
- (2) 뼈와 혼코어
- (3) 살아 있는 면양과 염소
- (4) 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
- (5) 인형용 차
- (6)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7) 순회극장 용품
- (8) 화장용 분침과 패드

[12년 29회]

6. 다음 각 용어를 설명하십시오. (10점)

- (1) 제4류 주 제2호 제0405호 ‘버터 및 데어리 스프레드’
- (2) 제5류 주 제3호 ‘아이보리’
- (3) 제17류 소호 주 제1호 ‘조당(Raw sugar)’
- (4) 제20류 주 제6호 제2009호의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주스’

물음 1. 관세율표 제4류

(1) 제4류 주 제1호

이 류에서 "밀크"란 전유나 탈지유(일부 탈지나 완전 탈지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제4류 주 제3호 나목

"데어리 스프레드"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9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제4류 주 제4호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물음 2. 관세율표 제95류

(1) 제95류 주 제6호 가목

"놀이공원의 탈것"이란 주로 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된 코스(수류를 포함한다)를 통하거나 특정 영역 내에서 한 사람 이상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나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탈것은 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내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탈 것에는 거주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제95류 주 제6호 나목

"워터파크 놀이기구"란 특별한 목적 없이 건설된 수로를 따라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 장치나 여러 장치와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워터파크 놀이기구는 워터파크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설비만을 포함한다.

(3) 제95류 주 제6호 다목

"유원지용 오락물"이란 운, 힘이나 기술을 겨루는 게임으로 보통 기사나 안내원이 있으며 영구적인 건물이나 독립된 구내상점 안에 설치된다. 유원지용 오락물에는 제9504호의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음 3. 4단위 호

- (1) 치즈와 커드 : 제0406호
- (2) 뼈와 혼코어 : 제0506호
- (3) 살아 있는 면양과 염소 : 제0104호
- (4) 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 : 제9405호
- (5) 인형용 차 : 제9503호
- (6)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제9607호
- (7) 순회극장 용품 : 제9508호
- (8) 화장용 분첩과 패드 : 제9616호 끝.

[문제 2] 관세율표 제18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점)

물음 1) 다음 규정을 각각 서술하십시오. (17점)

- (1) 관세율표 제90류 주(Notes) 제6호
- (2) 관세율표 제91류 주(Notes) 제1호 사목
- (3) 관세율표 제92류 주(Notes) 제1호

물음 2) 다음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를 각각 쓰시오. (3점)

- (1) 인공관절(Artificial joints)
- (2)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 (3) 제도용구(Drawing instruments)

[06년 23회]

6. 관세율표상 정형외과용 기기를 설명하십시오. (10점)

[14년 31회]

6. 관세율표 제90류의 주 제6호에서 규정한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10점)

[17년 34회]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십시오. (50점)

-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정된 제외물품을 설명하십시오. (10점)
- (2) 제90류, 제91류, 제92류의 분류체계를 관세율표 4단위(Heading) 기준으로 설명하십시오. (12점)
- (3) 제18부에 속하는 국내주를 모두 설명하십시오. (10점)
- (4) 제90류 주2, 주3, 주4, 주5의 규정을 설명하십시오. (10점)
- (5) 제91류의 주3에서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제92류의 주2에서 규정한 활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8점)

물음 1. 규정

(1)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쥘레가 아닌 한 족 이어야 한다).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하는 기기

(2)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1호 사목

제85류의 물품. 다만, 물품 상호간이나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나 시계용 무브먼트의 부분품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85류).

(3) 관세율표 제92류 주 제1호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나. 제85류나 제90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로보스코프나 그 밖의 부속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닛 속에 결합되거나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 다. 완구용품(제9503호)
- 라. 악기 소제용 브러시(제9603호),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 마. 수집품이나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물음 2. 4단위 호

- (1) 인공관절 : 제9021호
- (2)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 제9208호
- (3) 제도용구 : 제9017호 끝.

[문제 3] 관세율표 제27류, 제28류, 제29류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물음 1) 관세율표 제2711호에서 분류한 탄화수소에 포함하는 가스(액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순도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품목분류하고, 제2711호에서 제외하는 것을 해당 호(Heading)를 포함하여 기술하십시오. (13점)

물음 2) 관세율표 제2713호에 포함하는 “석유의 그 밖의 잔재물”과 제28류와 제29류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함유된 주요한 “불순물(impurity)”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11점)

물음 3) 관세율표 제2905호에서 “비환식알코올”의 용어 정의를 쓰고, 제29류 주(Notes) 제2호 자목을 기술하십시오. (6점)

[01년 18회]

5. 제28류와 제29류에 분류되는 불순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10점)

물음 1. 제2711호 등

(1) 탄화수소에 포함하는 가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 ① 메탄과 프로판 :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2711호 분류
- ② 에탄과 에틸렌 : 순도가 95% 미만인 것은 제2711호에 분류하고,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분류한다.
- ③ 프로펜(프로필렌) : 순도가 90% 미만인 것은 제2711호에 분류하고,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분류한다.
- ④ 부탄 : 노르말 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가 각 95% 미만의 것은 제2711호에 분류하고, 노르말 부탄이나 이소부탄의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분류한다.
- ⑤ 부텐 : 부틸렌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 미만의 것은 제2711호에 분류하고, 부텐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분류한다.

(2) 제2711호 제외물품

- ① 순수한 상태 이거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상태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탄화수소(메탄과 프로판은 제외한다)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탄화수소 : 제2901호

[이러한 탄화수소에 방향족물질이 가스 누출 등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첨가된 경우,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지 않는 한 여전히 제2901호에 포함된다 (제29류 총설). 에탄·에틸렌·프로펜·부탄·부텐과 부타디엔에 대하여는 상기 (1)의 ②, ③, ④와 ⑤에 순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 ②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화 부탄(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3606호
- ③ 액화 부탄을 함유하고 있는 흡연용 라이터나 그 밖의 라이터 부분품 : 제9613호

물음 2. 잔재물, 불순물

(1) 제2713호 “석유의 그 밖의 잔재물”

- ① 특정의 선택 용제로 윤활유를 처리하여 추출되는 것
- ② 석유에서 얻은 석유 검과 그 밖의 수지성 물품
- ③ 산 잔재물과 이미 사용한 표백토류로서 소량의 유분을 함유한 것

(2) 제28류, 제29류의 불순물

1) 불순물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과정(정제를 포함한다)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종류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 ②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 ③ 제조과정(정제를 포함한다) 중에 사용한 시약
- ④ 부산물

3) 예외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제28류 및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음 3. 제2905호 등

(1) 비환식알코올의 정의

비환식알코올은 하나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로 치환하여 얻어진 비환식탄화수소의 유도체이다. 이들은 산소화합물로서 산과 반응하면 에스테르로 알려진 화합물이 생성된다.

(2) 제29류 주 제2호 자목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을 테블릿 모양·막대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연료,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 충전용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 연료와 액화가스 연료(제3606호) 끝

[문제 4] 관세율표 제8537호와 제9032호에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점)

물음 1) 관세율표 제85류 주(Notes) 제10호 및 제90류 주(Notes) 제7호 가목과 나목을 기술하십시오. (11점)

물음 2)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와 제9032호에 포함하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9점)

[11년 28회]

4. 관세율표상 디지털 카메라(제8525호)와 광학식 카메라(제9006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상품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제90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원칙을 해당 “류의 주”에 근거하여 쓰시오. (10점)

물음 1. 제85류 주 제10호, 제90류 주 제7호

(1) 제85류 주 제10호

제8537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나 그 밖의 전기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 적외선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543호).

(2) 제90류 주 제7호 가목, 나목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음 2. 제8537호, 제9032호 (9점)

(1) 제8537호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란 특수 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제8537호에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

(2) 제9032호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제9032호 해설서에 따르면,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는 다음의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 ㉠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 장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금속이나 바이메탈의 막대·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나 벨로우·부자 등)를 사용한다.
 -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 ㉢ 기동 장치·정지 장치·조작 장치측정 기기(또는 감응 장치) : 조절해야 할 변량(압력, 온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이거나 변화에 감응하는 장치
- ②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거나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
- ㉠ 측정 장치 : 조절되는 변량의 실제 값을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 ㉡ 전기식 조절 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를 부여하는 장치
 - ㉢ 기동 장치·정지 장치·조작 장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 끝.

이하야백

문제 1. 관세율표 제1부와 제20부 (30점)

물음 1. 관세율표 제4류

(1) 제4류 주 제1호

이 류에서 "밀크"란 전유나 탈지유(일부 탈지나 완전 탈지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제4류 주 제3호 나목

"데어리 스프레드"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9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제4류 주 제4호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 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물품 2. 관세율표 제95류

(1) 제95류 주 제6호 가목

"놀이공원의 탈것"이란 주로 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된 코스(수류를 포함한다)를 통하거나 특정 영역 내에서 한 사람 이상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나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탈것은 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내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탈 것에는 거주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제95류 주 제6호 나목

"워터파크 놀이기구"란 특별한 목적 없이 건설된 수로를 따라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 장치나 여러 장치와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워터파크 놀이기구는 워터파크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설비만을 포함한다.

(3) 제95류 주 제6호 다목

"유원지용 오락물"이란 운, 힘이나 기술을 겨루는 게

임으로 보통 기사나 안내원이 있으며 영구적인 건물이나 독립된 구내상점 안에 설치된다. 유원지용 오락물에는 제9504호의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음 3. 4단위 호

- (1) 치즈와 커드 : 제0406호
- (2) 뼈와 혼코어 : 제0506호
- (3) 살아 있는 면양과 염소 : 제0104호
- (4) 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 : 제9405호
- (5) 인형용 차 : 제9503호
- (6) 슬라이드파스너와 그 부분품 : 제9607호
- (7) 순회극장 용품 : 제9508호
- (8) 화장용 분첩과 패드 : 제9616호 끝.

문제 2. 관세율표 제18부 (20점)

규정

(1)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쥘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교정하는 기기

(2)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1호 사목

제85류의 물품. 다만, 물품 상호간이나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나 시계용 무브먼트의 부분품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85류).

(3) 관세율표 제92류 주 제1호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나. 제85류나 제90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로보스코프나 그 밖의 부속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닛 속에 결합되거나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다. 완구용품(제9503호)

라. 악기 소제용 브러시(제9603호),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마. 수집품이나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물품 2. 4단위 호

(1) 인공관절 : 제9021호

(2)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 제9208호

(3) 제도용구 : 제9017호 끝.

문제 3. 관세율표 제27류, 제28류, 제29류 (30점)

제2711호 등

(1) 탄화수소에 포함하는 가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 ① 메탄과 프로판 :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2711호 분류
- ② 에탄과 에틸렌 : 순도가 95% 미만인 것은 제2711호에 분류하고,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분류한다.
- ③ 프로펜(프로필렌) : 순도가 90% 미만인 것은 제2711호에 분류하고,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분류한다.
- ④ 부탄 : 노르말 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가 각 95% 미만의 것은 제2711호에 분류하고, 노르말 부탄이나 이소부탄의 순도가 95%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분류한다.
- ⑤ 부텐 : 부틸렌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 미만의 것은 제2711호에 분류하고, 부텐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 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분류한다.

(2) 제2711호 제외물품

① 순수한 상태 이거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상태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탄화수소(메탄과 프로판은 제외한다)

나 상거래 관습상 순수한 탄화수소 : 제2901호

[이러한 탄화수소에 방향족물질이 가스 누출 등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첨가된 경우,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지 않는 한 여전히 제2901호에 포함된다(제29류 총설). 에탄·에틸렌·프로펜·부탄·부텐과 부타디엔에 대하여는 상기 (1)의 ②, ③, ④와 ⑤에 순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②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용량이 300cm³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화 부탄(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3606호

③ 액화 부탄을 함유하고 있는 흡연용 라이터나 그 밖의 라이터 부분품 : 제9613호

물품 2. 잔재물, 불순물

(1) 제2713호 “석유의 그 밖의 잔재물”

- ① 특정의 선택 용제로 윤활유를 처리하여 추출되는 것
- ② 석유에서 얻은 석유 검과 그 밖의 수지성 물품
- ③ 산 잔재물과 이미 사용한 표백토류로서 소량의 유분을 함유한 것

(2) 제28류, 제29류의 불순물

1) 불순물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종류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 ②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 ③ 제조공정(정제를 포함한다) 중에 사용한 시약
- ④ 부산물

3) 예외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제28류 및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

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음 3. 제2905호 등

(1) 비환식알코올의 정의

비환식알코올은 하나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로 치환하여 얻어진 비환식탄화수소의 유도체이다. 이들은 산소화합물로서 산과 반응하면 에스테르로 알려진 화합물이 생성된다.

(2) 제29류 주 제2호 자목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을 태블릿 모양·막대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연료,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 충전용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 연료와 액화가스 연료(제3606호) 끝

문제 4. 제8537호와 제9032호 (20점)

제85류 주 제10호, 제90류 주 제7호

(1) 제85류 주 제10호

제8537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나 그 밖의 전기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 적외선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 8543호).

(2) 제90류 주 제7호 가목, 나목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가 발생하여

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음 2. 제8537호, 제9032호 (9점)

(1) 제8537호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란 특수 기능(예: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제8537호에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

(2) 제9032호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제9032호 해설서에 따르면,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는 다음의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 장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금속이나 바이메탈의 막대·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나 벨로우·부자 등)를 사용한다.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 기동 장치·정지 장치·조작 장치측정 기기(또는 감응 장치) : 조절해야 할 변량(압력, 온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이거나 변화에 감응하는 장치

②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 (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이거나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아래의 장치들로 구성한다.

㉠ 측정 장치 : 조절되는 변량의 실제 값을 측정하며,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 전기식 조절 장치 :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를 부여하는 장치

㉔ 기동 장치·정지 장치·조작 장치 :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
끝.

이하여백